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



정

[시행 2018. 9.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60호, 2018. 9.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044-201-326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시"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료"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정부납부기술료"란 이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를 소유한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실시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영리기관을 말한다.
 6. "정액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7. "경상기술료"란 기술을 사용한 대가를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집계하여 매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총액,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때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변경 내역을 종합하여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료율은 이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비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영리기관의 기술료)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제4조제2항의 직접실시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함에 있어 정액기술료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기술료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액기술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경상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④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실용화·사업화 목적이 명확한 사업 또는 과제이거나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기술료 납부 대상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의 공고 및 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금액, 시기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한 정액기술료 징수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액기술료로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필요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한 경상기술료 징수기준)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경상기술료로 징수할 때에는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2퍼센트
2.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6퍼센트
3. 대기업: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8퍼센트
- ② 전문기관의 장은 경상기술료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납부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간별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퍼센트
2.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30퍼센트
3.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20퍼센트
4. 3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제3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협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한다.

제11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3.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금액: 전문기관에 납부
2.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 등의 관리)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술료 사용실적 등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기술료 징수실적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0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기술실시계약, 기술료납부 이행계획, 기술실시계약 변경,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등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가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 사용계획 수립
4.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재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동관리규정 별표4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이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별도 지침 제정·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관련 별도 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수행경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 - 560호, 2018. 9. 1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2022년까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